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2. 20.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위

- 가. 제출일자 : 2002. 12. 5
- 나. 제출자 : 서산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12. 6
- 라. 상정일자 : 2002. 12. 20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고 또한 시민들의 물소비량을 억제하여 줌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도록 하였고 상수도 사용자의 업종과 사용구간의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여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인상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납부기간 연장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범위완화(안 제6조, 안 제7조).
- 가설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적용과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 건설업법 적용(안 제 8조, 안 제10조).

- 급수공사비 납부기간 연장 및 미납으로 취소시 신청인에 통보 (안 제13조).
-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납부기한과 수도사용자의 신고사항 규정 완화(안 제14조, 안 제20조).
-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행 요금의 65% 인상 및 요금부과 업종을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하고, 사용구간을 2~6개에서 2~5개 구간으로 조정(안 별표 2, 별표 2-1)
- 업종 통폐합에 따른 업종 구분조정(안 별표 3).
- 가구 분할제 적용범위 확대(안 제30조).
- 흡수점 이하의 장치 설치규정 및 급수장치의 손료 폐지 (안 제16조, 안 제34조).
- 수도시설이 사기 또는 부정 사용시 과태료 규정 폐지(안 제4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생산원가의 54.93%로 낮은상태 수준으로 물소비 증가로 인한 장기적으로 물부족 사태를 예방하고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운영의 적자를 해소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717.03원에서 판매단가 393.8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 54.93%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공기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2001년도 상수도 사업의 결산결과를 보면 부채비율이 51.86%이며, 당기 순손실금액이 6억 3천 8백만원으로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며
-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과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2003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계속 누적되는 상수도 재정 적자를 해소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총괄원가의 90%로 조정하였고, 충남도 2002.11월말 평균 70.6%이며, 우리시는 평균 업종간 65% 인상안으로

업종간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업종별은 2~6개 구간에서 2~5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서산시 소비정책심의위원회(2002. 8. 16)에서 인상안 가결과 서산시 공고 제388호(2002. 10. 10)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2002. 11. 30)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며

-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또한 물소비를 억제하여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줌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며, 업종의 통폐합으로 업종간 차별화된 요금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업종간 평균 65% 인상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문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
----------	------

제출년월일 : 2002. 12. 5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과 사용구간의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며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그동안 상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정하려고 함.

2. 주요골자

- 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6조).
- 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범위 완화(안 제7조).
- 다. 일시급수공사시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적용(안 제8조).
- 라.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요건 건설업법 적용(안 제10조).
- 마. 급수공사비 납부기간 연장 및 미납으로 취소시 신청인에 통보(안 제13조).
- 바.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납부기한 완화(안 제14조).
- 사.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규정 폐지(안 제16조).
- 아. 수도사용자의 신고사항 규정 완화(안 제20조).
- 자. 소화용 급수틀 연습용으로 사용시 공무원입회하에 시간제한 완화(안 제22조).
- 차.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규정 완화(안 제23조).
- 카.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행요금의 65%인상 및 요금 부과 업종을 6개업종에서 4개업종으로 통폐합, 사용구간을 2~6개 구간에서 2~5개 구간으로 조정(안 별표2, 별표2-1).
- 타. 업종 통폐합에 따른 업종구분 조정(안 별표 3).
- 파. 가구분할제 적용 범위 확대(안 제30조).
- 하. 급수장치의 손료 폐지(안 제34조).

- 거. 일시급수 사용요금 납부기한 완화(안 제37조).
- 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상수도요금중 2,000원 감면규정 신설(안 제39조).
- 더. 수도사용자의 급수장치 검사시 권한 축소(안 제40조).
- 러. 정수처분 규정 완화(안 제42조).
- 머. 수도시설의 사기 또는 부정사용시 과태료규정 폐지(안 제4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23조(공급규정)
- 나.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지침(행정자치부, 2001. 6 , 2002. 4)
- 다.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통보(충청남도 예산 13388-387, 2002. 4. 26호)
-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정요청(충청남도 치수 58442-714, 2002. 6. 10호)
- 마.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계획(충청남도 기감 12485-10658, 2002. 6. 25호)
- 바.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2002. 8. 16.) : 인상안 가결.
- 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하수도요금감면(충청남도 복지 65130-2391, 2002. 9. 2호)
- 아. 규제개혁위원회 확정심의·의결(기감05090-11485호, 2002. 10. 31호)
- 자. 예산조치
- 차. 관련사업계획서
- 카.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없음
- 타. 승인, 인가, 보고등 관련서류 : 별첨
- 파. 준칙안(표준안)등 : 없음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선납된”을 “납부된”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 납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비 납부 통보후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는 별도로 고지에 의하여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필요한 경우 주요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삭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제10조 제1항중 제1호를 삭제 한다.

제1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 연장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통보하고 연장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제14조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다만, 영세서민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 한다.

제20조 제1항중 제7호를 삭제 한다.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화용 급수틀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한다.

제2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조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9조 제3항 가구분할제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말한다.

제34조를 삭제 한다.

제37조 제목을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에서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납부”로 하고 제1 항중 “선납하게”를 “납부하게”로 한다.

제3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상수도요금중 가구당 2,000원 감면(단, 2,000원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제40조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제44조 제목을 “과태료등”에서 “행정처분”으로 하고 본문중 “과태료및행정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한다. 별표2, 별표2-1와 별표3,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업종별 요금표

업종별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² /월)	m ² 당 단가 (원)
가 정 용	· 1 ~ 20	450
	· 21 ~ 30	630
	· 31 이상	1,040
일 반 용	· 1 ~ 50	685
	· 51 ~ 100	1,060
	· 101 ~ 300	1,185
	· 301 ~ 500	1,470
	· 501 이상	1,920
대 중 탕 용	· 1 ~ 500	670
	· 501 ~ 1,000	1,000
	· 1,001 ~ 1,500	1,100
	· 1,501 이상	1,200
산 업 용	· 1~200	360
	· 201 이상	545

[별표2-1] 구경별 요율표

계량기구경별	요 액
13m/m	1,500원
20m/m	4,210원
25m/m	6,770원
32m/m	12,030원
40m/m	20,310원
50m/m	31,140원
75m/m	75,540원
100m/m	128,800원
150m/m	280,620원
200m/m	398,590원
250m/m	-
300m/m	-

(별표 3) 업종구분표

업종별	업태명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들, 칠물 등의 소매점 10㎡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점, 구멍기계등 · 경로당, 노인회관, 탁아소, 양로원,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시설소화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병원 ·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원호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 식품 접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키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학원 · 사진현상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조업 ·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 제조업 · 체육시설업 · 단기급수용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구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 안마시술소 · 특수목욕장업 ·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 이하, 목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목욕장업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를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

[별표 5]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 급수를 도용한 자	· 부정 급수장치 철거 명령
2.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 공사를 한 자	· 미승인시설 급수장치 철거 명령
3.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무단이설 또는 망실한 자	· 직접 3개월간의 사용량 평균을 기준으로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기간 동안의 사용료 추징, 단, 3개월 미만시는 사용기간의 평균을 기준 · 계량기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한 변상조치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건물구조변경, 오물투기, 공작물 설치로 인한 검침장애, 봉인 파손한 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을 한 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6. 소화전의 무단사용	· 수도사용 수량의 인정량 부과 및 정수처분
7. 승인없이 업종을 변경한 자	· 업종변경기간 동안 차액 추징 · 업종 직권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p> <p>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제7조(공사의 시행)① (생략)</p> <p>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8조(일시급수공사) ① (생략)</p> <p>1.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현장의 가설건축물</p> <p>2.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p> <p>3. 공공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p> <p>② ~ ③ (생략)</p> <p>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① (생략)</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 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라목에 정한자<전문개정 99. 5. 10></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 납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비 납부 통보후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는 별도 고지에 의하여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 납부된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필요한 경우 주요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일시급수공사) ① (현행과 같음)</p> <p>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삭제)</p> <p>(삭제)</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현행과 같음)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p> <p>③ ~ ④ (생략)</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다만,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임시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개정 96.1.12></p> <p>② (생략)</p> <p>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p> <p>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 연장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통보하고 연장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다만, 영세서민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 (삭제)</p> <p>(삭제)</p> <p>(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신고) ① (생략) 1 ~ 6 (생략)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p>	<p>제20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생략)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한다.</p>
<p>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 책임) ① ~ ③ (생략)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 (생략) ⑥ 제29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제29조 제3항 가구분할제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말한다.</p>
<p>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p>	<p>(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명	개 정 안
<p>제44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p>	<p>제44조(행정처분) ----- ----- ----- ----- ----- 행정처분에 ----- ----- -----</p>